

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729호
- 나. 발 의 자 : 유정희 의원(찬성자 25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

- 「장애예술인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,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4조제항제2호의2 신설).
- 나.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시행령(2023년 3월 28일 시행)의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·유통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.

나. 장애예술인 지원 현황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울시 장애예술인 현황(2023년 8월)에 따르면,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서울시 예술인 총 6만 2천여 명 중 장애예술인은 총 838명으로 남성이 68.3%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, 강북구와 노원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(붙임1).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‘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(예술인플랜 2022~2026)’ 내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.

< 서울시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현황 >

연번	사업명	예산	비고
1	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	200백만원	서울시
2	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	60백만원	서울시
3	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	585백만원	서울문화재단
4	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	500백만원	서울문화재단

-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‘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’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50.1%가 비정규직이고, 개인 평균 수입이 연간 약 200만원 대이며, 가장 필요한 지원은 창작 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음.

다. 조례의 타당성

- 최근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장하고,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3. 3. 28.시행)되었음.
-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(미술품, 공예품, 공연 등)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, 이는 장애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라. 주요 조문 검토

(1)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사항 신설(안 제4조)

- 개정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‘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,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’를 신설하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~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9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~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, 공연 등의 창작물(이하 “창작물”이라 한다)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 3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이는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장이 수행해야 할 시책을 구체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(2)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신설(안 제5조의2)

- 개정안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시장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5조의2(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) 시장은 「장애예술인지원법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</u>

-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는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외에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이 없는바,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.

○ 총괄

(단위: 명)

전국	서울시 전체	서울시 장애예술인
169,176	61,809(전국의 36.5%)	838

○ 자치구별 현황

구분	종로구	중구	용산구	성동구	광진구	동대문구	종량구	성북구	강북구
인원(명)	31	16	18	22	29	24	21	43	60
비율(%)	3.7	1.9	2.1	2.6	3.5	2.9	2.5	5.1	7.2
구분	도봉구	노원구	은평구	서대문구	마포구	양천구	강서구	구로구	금천구
인원(명)	26	55	47	23	43	32	49	26	14
비율(%)	3.1	6.6	5.6	2.7	5.1	3.8	5.8	3.1	1.7
구분	영등포구	동작구	관악구	서초구	강남구	송파구	강동구	합계	
인원(명)	25	39	33	35	49	43	35	838	
비율(%)	3.0	4.7	3.9	4.2	5.9	5.1	4.2		

○ 성별 현황

(단위: 명)

합계	여성	남성
838(100%)	266(31.7%)	572(68.3%)

○ 연령별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	80대	합계
인원(명)	110	169	155	170	135	78	21	838
비율(%)	13.1	20.2	18.5	20.3	16.1	9.3	2.5	100

○ 분야별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문학	미술	사진	건축	음악	국악	무용	연극	영화	연예	만화	복수	합계
인원(명)	118	176	18	-	228	20	20	103	44	39	7	65	838
비율(%)	14.1	21.0	2.1	0	27.2	2.4	2.4	12.3	5.2	4.7	0.8	7.8	100

의안번호
729

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	서울특별시장	2023. 5. 16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<p>〈개정 배경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2.9.17.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23.3.28.) 사항 반영하여 조례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조항 신설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(시행계획)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(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) ※법 제6조제2항2의2 ○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 신설 (안 제5조의2 신설) ※법 제9조의2, 시행령 제5조의2 				
추진경과	○ '23. 5 .16.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(유정희 의원 대표발의)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장진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, 개정조례안에 동의함.				
대응방안	○ 대표발의의원 대상 “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경과 및 동향”에 대해 설명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윤선희(☎2133-2552)	담당	고은희(☎2133-2555)